##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06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8.

발 의 자:조승래·강병원·김병기

김승원 • 도종환 • 서동용

서영석 · 송기헌 · 신동근

양정숙・양향자・이성만

이용빈 · 이탄희 · 최종유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·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,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·분석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연령과 성·젠더 요소를 반영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의 새로 운 부가가치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,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,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,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·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제15호의4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의4.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

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,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·분석하는 경우,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3항제15호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 ①・②	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③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15의3. (생 략)	1. ~ 15의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5</u> 의4.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
	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
	위한 과학기술의 구현
16. (생략)	16.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	제14조(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
준평가) ①·② (생 략)	준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
	시하는 경우, 대상기술의 성격
	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
	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26조의2(과학기술통계와 지표	제26조의2(과학기술통계와 지표
의 조사・분석) ①・② (생	의 조사·분석) ①·② (현행과
략)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실시
	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
	조사・분석하는 경우, 개별 과

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

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③ ~ ⑤ (생 략)

 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

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